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26일(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운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수준 인상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전용차시, 시내운송, 셔틀료, 기타 실제 화물(지급운임)이 높은 지역 운임은 낮은 안전운임 적용되지 않습니다(안전운임=최저운임) <- 2020년 기존 운임 또는 협의 후 안내 예정**